

農村人力의 農外就業可能性과 就業類型分析

崔 洋 夫 · 李 容 晚 · 朴 修 一

首席研究員, Ph.D.
(農業經濟學)

責任研究員
農村開發 研究室

研究員

- I. 序論
- II. 農外就業 可能性 分析
- III. 農外就業 類型分析
- IV. 零細小農과 農外就業政策
- V. 結論

I. 序論

1. 問題의 提起

農外所得增大와 農業 인력(특히 영세소농인력)의 農外就業을 促進시키는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農村工業開發(또는 農村工業化)이 검토되고 있다. 農촌공업 개발이 영세소농가들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취업기회를 마련, 소득증대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영세소농 농민들이 農외취업 또는 취업전환(탈농)의 의사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취업 기회에 현실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農외소득증대와 農촌공업개발에 관한 많은 논의들은, 대부분 영세소농의 경우 영세한 農業生產資源에 배달려 있는 것보다는 農外就業 또는 脱農에 의한

就業轉換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다는 假定 밑에서¹ 어떻게 하면 農촌공업개발을 촉진시키고, 영세소농의 農외취업과 취업전환을 誘導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관심을 集中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책적인 관심에서 看過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은 과연 영세소농 자신들도 農외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또한 農외취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農외취업을 원하는 경우 탈농과 같은 적극적인 취업전환을 희망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들이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 農외소득과 農촌공업개발에 관한 정책적 논의에는 영세소농의立場이 반영되지 않은 채 政策的當爲性에서 영세소농의 취업전환이 영세소농을 위해서는 물론, 사회적으로, 특히 農業構造改善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 스러운 것처럼 판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農외소득과 農촌공업개발이라는 정책문제와 관련하여 이 정책의 구체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農業인력(특히 영세소농층)을 중심으로 그들의 農外就業意思와 就業 possibility, 그리고 그들이 希望하는 農外就業類型에 관한 實證分析

*本論文은 현재 當研究院에서 추진중에 있는 “農外所得과 農村開發”에 관한 研究 중 農業인력개발에 관한 부분의 일부를 간추린 것이다.

을 시도한 것이다.

2. 分析資料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79년 5월~8월에 걸쳐 미리 작성된 질문지로 面接調查方式에 의해서 萬集되었다. 조사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정하였다.

첫째, 地域選定은 204개 農村經濟圈 中에서² 40개 이상의 농촌공장이 있는 경제권으로 業種分布가 다양하여, 대도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곳으로 판정된 論山, 羅州, 榮州, 密陽의 4개 농촌경제권을 有意選定하였다.

둘째, 각각의 경제권에서 工場地帶와의 交通條件을 기준으로 工場隣接地域과 工場遠接地域에서 각각 2개部落씩을 任意抽出하였다.

세째, 각 경제권별로 선정된 4개부락에서 農家 家口主 18명씩을 無作爲로 선정, 면접대상자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零細農, 小農, 中農, 大農의 구분은 관행에 따라 耕地所有面積을 기준으로 하여 1,500평 미만을 영세농, 1,500평 이상 3,000평 미만까지를 소농, 3,000평 이상 6,000평 미만까지를 중농, 그리고 6,000평 이상을 대농으로 하였다. 영세소농은 3,000평 미만의 농가를 모두 칭하는 이름으로 사용하였다.

表 1 조사대상자의 선정과 분포

지역성격	조 사 부 락 수	총면접 조사자수	분석된 자료 수				
			계	1,500 평이하	1,500- 3,000 평	3,000- 6,000 평	6,000 평이상
공장인접 지역 ¹⁾	8	144	112	66	29	16	1
공장원접 지역 ²⁾	8	145	118	39	33	38	8
계	16	289	230 ³⁾ (100.0)	105 (45.6)	62 (27.0)	54 (23.5)	9 (3.9)

1) 인접지역 : 공장지대로부터 4km 이내, 출퇴근 가능지역.

2) 원접지역 : 공장지대로부터 4km 이상, 출퇴근 불가능지역.

3) 일부 항목의 누락으로 분석포함한 59명 제외.

본 연구에서는 면접조사 대상을 개별농가의 家口主에 국한시켰다. 家口員의 農外취업은 현실적으로 가구전체의 農外소득증대에 크게 寄與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³⁾, 적극적인 의미에서 農外취업과 취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구주의 意思決定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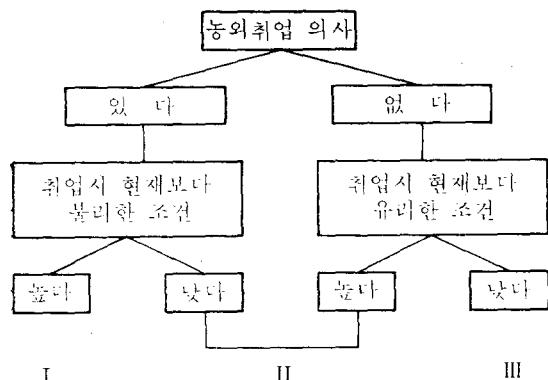
II. 農外就業 可能性 分析

농촌공업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農業을 主業으로 하고 있는 농민들 가운데 農外취업이 가능한 人力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농촌공업 개발과 農外소득정책의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농민층이 얼마나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지역에 입주하는 농촌공업이 필요로 하는 勞動力의 확보가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에 대하여 직접적인 시사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농민들의 “農外就業”이라는 말은 농민들이 농촌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에 취업하는 경우만을 생각하는 제한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農外취업의 의미를 이렇게 제한시켜 사용한 것은 농민들의 農外취업 가운데서 공장 취업에 의한 勞賃收入이 농민들의 農外소득을 증대시키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하나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공업 개발 문제가 정책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農外취업 가능인력의 분석은 농민들의 공장취업 의사와 현실적인 공장취업 능력을 종합하여 파악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농외취업 가능인력”은 農外就業意思가 단순한 의사만으로 끝나지 않고 就業能力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人力을 의미한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농민들의 農

圖 1 農外취업 의사의 구분



(직극적 취업의사)(소극적 취업의사)(취업반대의사)

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고 할 때 그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력을 말한다.

1. 農外就業意思 分析

농민들의 농외취업 가능인력에 대한 분석은 먼저 농민들의 농외취업의사(바꾸어 말하면 농촌공장취업의사)가 어떤가를 분석해야 한다. 농민들의 농외취업의사는 <圖1>과 같은 방법에 의해 농외취업의사가 적극적인 농가(I), 소극적인 농가(II), 그리고 농외취업의사가 전혀 없는 농가(III)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구분방법은 다음과 같다. 농민들이 현재의 주어진 조건 밑에서 가지고 있는 농외취업의사의 有無를 먼저 파악하고, 공장취업의사가 있는 농가에게는 공장취업시 不利한 就業條件 9개 항목을, 취업의사가

表 2 農외취업의사에 따른 조사농민 분포

단위: 명 (%)

농외취업의사	취업조건에 따른 농외취업의사		계
	높다	낮다	
있 다	61(29.0)	53(25.3)	114(54.3)
없 다	44(21.0)	52(24.7)	96(45.7)
계	105(50.0)	105(50.0)	210*(100.0)

*조사당시 공장에 취업하고 있는 농민과 무응답자 20명 제외.

없는 농가에게는 有利한 취업조건 8개 항목을 제시⁴ Likert 尺度에 의거, 농외취업의사 정도를 측정하고, 평균을 중심으로 농외취업 의사가 높은 층으로 구분하여 분석대상 농민의 취업의사를 <表1>과 같이 구분하였다.

전체적으로 농외취업의사를 가지고 있는 농민은 분석대상의 54.3%, 없는 농민은 45.7%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농외취업의사를 가지고 있는 I형에 속하는 농민은 29.0%, II형에 속하는 소극적인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는 농민은 46.3%, 그리고 공장취업의사가 전혀 없는 III형의 농민들은 24.7%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圖1>의 구분 방식에 의한다면 농외취업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I, II형에 속하는 농민은 전체 분석대상 농민의 75.3%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農外就業意思에 따른 農民의 性格 分析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외공장취업의사의 차이는 무엇 때문인가? 이 질문과 관련하여 우리 는 우선 다음과 같은 假說을 세울 수 있다.

가설 1: 영세 소농일수록 농외취업의사가 높을 것이다.

경지소유규모가 적은 영세소농에 속하는 농민 일수록 농외취업의사가 높을 것으로 가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영세소농은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소득증대를 위한 의욕이 높고, 농업생산자원의 영세성으로 현실적으로 농외취업을 할 수 있는 潜在勞動力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階層(예를 들면 중농이나 대농층)에 비하여 농외취업을 더 많이 희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表3>은 (가설 1)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농외취업의사와 경지소유규모 사이

表 3 농외취업의사와 경지소유규모의 관계

단위 : 명 (%)

농외취업의사	경지 소유 규모			계
	영세소농	중 농	대 농	
I (적극적)	54(35.8)	7(14.0)	—	61(29.0)
II (소극적)	65(43.0)	28(56.0)	4(44.4)	97(46.2)
III(반 대)	32(21.2)	15(30.0)	5(55.6)	52(24.8)
계	151(100.0)	50(100.0)	9(100.0)	210(100.0)

$$\chi^2=40.12, d_f=4, p<0.01, C=0.40$$

에는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영세소농층 가운데 적극적인 농외공장 취업의사를 가진 농민은 35.8%이며, 소극적인 농외취업의사를 가지고 있는 농민까지를 계산하면 전체 영세소농의 78.8%가 농외취업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表3>에 나타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은 첫째, 영세소농층에 속한 농민이라고 해서 모두 적극적인 농외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영세소농층 가운데서도 21.2%에 해당하는 농민들이 농외취업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둘째로는 중농과 대농층에서 각각 56.0%와 44.4%에 해당하는 농민들이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농외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농외취업 의사를 가지고 있는 중농층의 농민도 14.0%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농민들의 농외취업의사에 작용하는 要因에 대해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농민들의 농외취업의사에 작용하는 요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설을 추가로 생각하였다.

가설 2: 년령이 낮은 사람일수록 농외취업전환 의사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농외취업의사가 높을 것이다.

가설 4: 영농만족정도가 높을수록 농외취업의사가 낮을 것이다.

가설 5: 돈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인 사람일수록 농외취업의사가 높을 것이다.

이상의 가설들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操作의 개념정의와 測定方法은 아래와 같다.

가구주의 년령은 39세 이하, 40~49, 50~59, 60~69, 70세 이상의 5개급간으로, 교육수준은 국졸(국퇴 포함)이하, 중졸, 고졸, 대졸 등의 4개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營農滿足程度는 農業과 他產業과의 相對的 滿足度와 농업을 통한 發展可能性으로 측정하였다.⁵ 농업에 대한 展望이 긍정적인 경우 3점을, 중립적인 경우 2점을 그리고 부정적인 것에 1점을 주어 분석하였다. 돈에 대한 態度는 농민들이 한 달에 3만원 정도를 더 벌기 위해서 가정생활과 작업조건이 불리해지더라도 공장취업을 원하는지의 여부를 측정하여, 불리한 조건이라도 3만원은 벌기 위해 공장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3점, 未定에 2점,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 1점씩을 주어 분석하였다.⁶

이상의 방법에 따라 (가설 2,3,4,5)를 χ^2 -Test 방법에 의하여 檢證한 결과가 <表4>이다.

<表4>는 연령(가설 2)과 돈에 대한 태도(가설 5)를 제외한 교육수준(가설 3)과 영농만족도(가설 4)와 농외취업의사 사이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농민들의 농외취업의사는 경지

表 4 농외취업의사와 연령, 교육수준, 영농만족도 및 돈에 대한 태도의 관계

가 설	χ^2	d_f	유의 수준	통계적 유의성*	유관계수(C)
2(연령)	22.33	12	0.03	있음	0.31
3(교육수준)	4.13	9	0.90	없음	
4(영농만족도)	4.62	6	0.33	없음	
5(돈에 대한 태도)	57.48	9	0.01	있음	0.46

*5% 유의 수준

表 5 農외취업 능력정도 구분

학력	연령	40세미만	40세이상
중 졸 이 상		1	2
중 졸 미 만		2	3

1: 農외취업능력이 가장 높음.

2: 중간.

3: 가장 낮음.

규모(가설 1), 연령(가설 2), 돈에 대한 태도(가설 5)와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정도는 돈에 대한 태도($C=0.46$), 경지소유규모($C=0.40$) 그리고 연령($C=0.31$)의 순으로 나타났다.

3. 農外就業能力 分析

농민들이 農外就業意思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를 모두가 공장에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農외취업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미 앞의 분석에서 암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農외취업의사는 있으나 연령이 농민들의 農외취업을 제약하는 현실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農業人力의 農外공장취업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농민이 農외취업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区分하는 作業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별 농민들의 年齡과 學力水準을 기준으로 하여 (表 5)와 같이 농민들의 공장취업 능력 정도를 1, 2, 3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본 논문에서 연령과 학력수준을 농민들의 農외취업 능력 정도를 구분하는 지표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들의 農외취업은 공장취업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공장취업을 위한 조건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연령과 학력수준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공장취업을 희망한다고 해도 이들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

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농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업들의 일반적인 기능직원 모집 행정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연령으로서는 20~29세, 학력수준으로서는 중졸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⁷

둘째, 농민들이 農외취업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는, 농민들이 농촌공장에 就業할 수 있는 어떤 技術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농민들의 農외취업을 현실적으로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차원에서 農외취업을 희망하는 농민들에게 技術教育訓練을 실시한다는 전제 밑에서, 농민들이 현재 상태에서 어떤 特定技術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는 묻지 않고 다만 그들이 공장취업을 위한 기술교육훈련의 對象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중요시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연령으로서는 40세를, 학력수준으로서는 중졸을 기준으로 하여 農외취업 능력정도를 구분한 것은 40세 미만과 중졸 이상에 속하는 농민들이 국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40세 이상되는 농민들 보다는 농외 공장취업 능력정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정책적 차원에서 농민들에게 공장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기술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40세 미만층과 중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농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40세 이상 연령층의 農외취업능력이 낮을 것으로 규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40세 이상의 연령층이 農외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이 安定的이라든지 가구의 職業的 上向移動이 가능하다는 期待가 懷疑的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企業停年制 現況에 의하면⁸ 生產職의 정년은 45세까지가 13.1%이고, 46~50세까지가 52.6%이다. 그러

니까停年이 50세 이전인 경우가 전체 생산직 균로자의 65.7%인 것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40세 이상의 연령층인 농민이 농외취업을 하는 경우全生涯就業可能期間이 10년 이하에 불과한 것이다. 이 기간에 얻게 되는總就業所得과 농촌공장취업을 위하여拋棄한所得, 그리고 사회적, 심리적인 부담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바람직하고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농외취업 촉진을 위한 기술교육 투자 역시 상대적이지만 비생산적이라 볼 수 있다. 즉 40세 이상의 농민들은 오랜 동안의農事經驗에 의해 보다 높은 영농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직업적 안정기에 속한 연령층으로서 사회적으로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계속 그 직업에 남아 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기대되는 연령층인 것이다.

다음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은學力水準이다. 농촌공장 취업을 위한 교육의 대상은學力水準이 낮을수록 일정한 기출수준에도 도달하는 교육 과정은 걸게 마련이고, 교육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교육투자액과被教育者 개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부담은 증대될 것이다. 정책적인 지원에 의한 기출교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층으로는 개인적으로 최소한의努力과才能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의무교육 年限層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중졸을 중심으로 해서 능력수준을 높은 층과 낮은 층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기능직원 모집관행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表5〉의 구분방식에 따라 분석대상 농민들의 농외취업 능력을 경지소유 규모별로 구분한 것이 〈表6〉이다.

表 6 농외취업능력과 경지소유규모의 관계

단위: 명 (%)

농외취업 능력구분	경 지 소 유 규 모			계
	영세소농	중 농	대 농	
1	24 (15.9)	14(28.0)	4(44.4)	42(20.0)
2	44 (29.1)	15(30.0)	2(22.2)	61(29.0)
3	83 (55.0)	21(42.0)	3(33.3)	107(51.0)
계	151(100.0)	50(100.0)	9(100.0)	210(100.0)

〈表6〉에 의하면 조사대상 농민들 가운데 농외취업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층(1)에 속하는 농민은 전체의 20.0%에 불과하며, 영세 소농계층에서는 더욱 낮은 15.9%에 불과하다. 그리고 농외취업 능력이 가장 낮은 층(3)에 속하는 농민은 전체의 51.0%나 되며, 영세 소농층의 55.0%가 이 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農外就業 可能人力 分析

〈表6〉을 〈表3〉과 관련시켜 볼 때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는 영세소농일수록 상대적으로 농외취업 의사하는 높지만, 농외취업 능력은 낮다는 점이다.

영세소농의 농외취업과 취업전환(탈농)을 촉진하고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려는 농촌공업개발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고 생각되는 영세 소농들의 대부분이 농외취업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농외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직업기술교육 훈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농민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농외소득과 농촌공업 개발정책 자체에 중요한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다.

이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농외취업 가능인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농외취업 가능인력이라 함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데로 농외취업 의사 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장취업을 위해 기

圖 2 農외취업 가능정도의 구분

농외취업의사	농외취업 능력		
	1 (높음)	2 (중간)	3 (낮음)
I (적극적)	A		
II (소극적)		B	
III (반대)			C

A : 적극적 농외취업 가능인력
 B : 소극적 농외취업 가능인력
 C : 농외취업 불가능인력

술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추고 있는 인력을 의미한다.

〈圖 2〉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외취업의사와 농외취업 능력을 기준으로 農外就業 可能程度를 A,B,C로 구분한 것이다. A에 속하는 농민은 積極的인 意味에서 농외취업이 가능한 인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농외취업의사도 높을 뿐만 아니라 취업 능력도 높기 때문이다. B는 消極的인 意味에서 농외취업이 가능한 인력을 말한다. B에는 농외취업 의사가 높지만(I) 취업 능력이 중간(2) 정도이거나, 농외취업 능력이 높지만(1) 취업 의사가 소극적(II)인 농민, 그리고 소극적인 취업 의사(II)와 중간 정도의 취업 능력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 포함되어 있다. C는 농외취업이 不可能하다고 판단되는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농외취업 의사와 관계없이 농외취업 능력이 가장 낮은 농민들, 농외취업 능력이 높거나 중간 정도에 해당하더라도 농외취업 의사가 없는 농민들, 그리고 농외취업 의사도 없고 취업 능력도 낮은 농민이 C에 속한다.

이상과 같은 농업 인력의 A,B,C 3계층으로의 구분은 농외소득과 농촌공업 개발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책적 차원에서 농업 인력의 농외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농업 인력 개발정책을 추진한다고 할 때 優先적으로 정책

表 7 農외취업 가능인력의 구분

단위 : 명 (%)

농외취업의사	농외취업 능력			계
	1(높음)	2(중간)	3(낮음)	
I (적극적)	11 (5.2)	24(11.4)	26(12.4)	61(29.0)
II (소극적)	22(10.5)	25(11.9)	50(23.8)	97(46.2)
III (반대)	9 (4.3)	12 (5.7)	31(14.8)	52(24.8)
계	42(20.0)	61(29.0)	107(51.0)	210(100.0)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층은 A이며, B 계층은 그 다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C 계층에 속하는 농민들은 농외취업 촉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계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圖 2〉에 따라 분석대상농가의 농외취업 가능인력을 구분하여 본 것이 〈表 7〉이다.

〈圖 2〉에서 구분한대로 전체 분석대상농가 가운데서 5.2%에 해당하는 농민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농외취업이 가능한 인력(A)로 판정되었으며,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농외취업 가능인력(B)은 33.8%, 그리고 농외취업 불가능인력(C)은 전체의 61.0%로 나타나고 있다.

경지소유규모별로 농외취업 가능인력을 보면 〈表 8〉과 같다. 영세소농층 농민 가운데 적극적인 의미에서 농외취업이 가능한 인력은 6.0%에 불과하며, 소극적인 의미에서 농외취업이 가능한 인력까지 포함할 때는 (A+B) 38.4%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영세소농층 가운데서 농외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민의 비율도 61.6%

表 8 농외취업 가능정도와 경지소유규모의 관계

단위 : 명 (%)

농외취업 가능정도	경지소유 규모			계
	영세소농	중농	대농	
A	9 (6.0)	2 (4.0)	-	11 (5.2)
B	49(32.5)	18(36.0)	4(44.4)	71(33.8)
(A+B)	58(38.4)	20(40.0)	4(44.4)	82(39.0)
C	93(61.6)	30(60.0)	5(55.6)	128(61.0)
계	151(100.0)	50(100.0)	9(100.0)	210(100.0)

나 되고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사실들을 종합할 때 농외취업과 농촌공업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고 농업구조개선문제와 관련하여, 영세소농층의 농외취업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영세소농층의 농외취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은 영세 소농층을 포함한 농민들의 농외취업의사와 농외 취업능력, 그리고 농외취업 가능성에서 살펴본 농민들의 與件과는 많은 거리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영세소농의 農外所得增大를 위한 農外就業 促進이라는 생각은, 영세소농들의 農外就業 可能性이 현실적으로 限界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再檢討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IV장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III. 農外就業 類型分析

농업인력(특히 영세소농)의 농외취업 촉진에 관한 정책적 관심은 기본적으로, 農業人力의 就業轉換을 통하여 脱農과 離村⁹을 촉진시키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세소농의 경우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소득증대를 위해서나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영세농민들의 轉業을 통한 脱農이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농외취업을 희망하는 농민, 특

히 영세농민들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농외취업을 희망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처럼 영세농민들 스스로도 轉業을 통한 脱農을 희망하고 있는 것인가?

1. 農外就業의 類型區分

농민들의 농외취업유형과 관련하여 〈表 9〉와 같은 類型區分이 概念的으로 가능하다.¹⁰

농외취업을 희망하는 농민들을, 농업과 關聯 정도에 따라서, 農業生產을 계속하면서 농외취업을 하는 兼業型과 農業生產을 中止하고 非農業部門에 專業的으로 취업하는 脱農型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탈농형은 다시 농경지의 소유권을 가진 채 다른 농가들에게 小作(賃貸) 또는 (委託)을 주는 경우와 農耕地를 완전히 處分하고 농촌을 떠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비농업부문에 취업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서 마을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비농업부문에 취업하는 通勤型과 마을을 떠나 농촌 小都邑이나 지방도시로 移住하는 離村型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表 9〉와 같이 농외취업 유형은 I(통근겸업형), II(농경지를 소유한 통근 탈농형), III(농경지를 매매한 통근 탈농형), IV(농경지를 소유한 이촌 탈농형), V(농경지를 매매한 이촌 탈농형)의 5가지 유형으로의 구분이 가능하다.

〈表 9〉의 구분방법에 따라 농외취업의사를 가지고 있는 I, II형에 속하는 농민 158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현실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농외취업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실증분석 한 것이 〈表 10〉이다.

농외취업의사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 가운데서, 취업방법에 따라서 볼 때, 통근취업을 바라는

表 9 農外취업 유형의 개념적 구분

취업방법	농업생산 계속여부		
	탈농형 ²⁾		
겸업형	농경지 소유(임대)	농경지 매매	
	I	II	III
통근형	*	IV	V
이촌형			

1) 離村兼業型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유형임.

2) 脱農型은 취업방법에 관계없이 性格上 非農家가 됨.

表 10 농외취업희망 농민의 취업유형구분

단위: 명 (%)

취업방법	농업생산계속여부				계	
	겸업형	탈농형				
		농경지 임대	농경지 판매	소계		
통근취업희망	85 (65.9)	16 (12.4)	7 (5.4)	23 (17.8)	108 (83.7)	
이촌취업희망	—	9 (7.0)	12 (9.3)	21 (16.3)	21 (16.3)	
계	85 (65.9)	25 (19.4)	19 (14.7)	44 (34.1)	129* (100.0)	

*분류불가능 농민(소유농경지가 없는 농민) 29명 제외.

농민이 전체의 83.7%이며, 농사를 계속하면서 겸업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농민은 전체의 65.9%로 나타나고 있다. 농외취업희망 농민 중에 34.1%의 농민들이 탈농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農外就業類型과 農民의 性格 分析

그렇다면 농외취업의사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 가운데서 <表10>과 같이 희망하는 농외취업유형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농민들이 選好하는 농외취업 유형과 농민들의 社會經濟的 性格 사이에는 어떠한 相關關係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5가지의 假說을 設定하였다.

가설 1: 영세소농일수록 겸업형보다는 탈농형을 희망할 것이다.

가설 2: 연령이 적을수록 겸업형보다는 탈농형을 선호할 것이다.

가설 3: 학력이 높을수록 겸업형보다는 탈농형을 선호할 것이다.

가설 4: 농외취업의사가 적극적일수록 겸업형보다는 탈농형을 선호할 것이다.

가설 5: 농외취업 가능성이 높을수록 겸업형보다는 탈농형을 선호할 것이다.

영세소농층이 중대농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겸

表 11 경지소유규모에 따른 농외취업유형 구분

단위: 명 (%)

농외취업유형	경지소유규모			계
	영세소농	중대	농계	
I (통근겸업형)	61 (67.0)	21 (61.8)	3 (75.0)	85 (65.9)
II (통근탈농농 지임대)	11 (12.1)	4 (11.8)	1 (25.0)	16 (12.4)
III (통근탈농농 지매매)	4 (4.4)	3 (8.8)	—	7 (5.4)
IV (이촌탈농농 지임대)	7 (7.7)	2 (5.0)	—	9 (7.0)
V (이촌탈농농 지매매)	8 (8.8)	4 (11.8)	—	12 (9.3)
계	91 (100.0)	34 (100.0)	4 (100.0)	129 (100.0)*

*분류불가능 농민 29명 제외.

업형보다는 탈농형을 선호할 것으로 생각한 것은, 영세소농의 경우에 있어서 영세한 농업생산자원의 이용을 통한 농업소득의 증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농가소득의 농외소득 依存度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表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농외취업을 희망하는 영세소농의 67.0%가 통근겸업형(I)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촌 탈농형(IV, V)을 희망하고 있는 농민들은 16.5%, 그리고 통근 탈농형(II, III)은 16.5%로서 탈농을 희망하는 영세농민은 33.0%로 나타났다.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외취업 유형의 차이가 개별농민들의 연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 것으로 본 것은, 연령이 적을수록 공장취업에 따른 기술습득이 容易하고 새로운 職場에 대한 適應力이 높고 扶養家族 단위가 적어 集團移住가 용이하고 따라서 겸업형보다는 탈농형을 선호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탈농형을 선호할 것으로 假定한 것은, 역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직업기술습득이 용이하고 취업기회의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報酬水準도 상대적으로 높아 겸업형보다는 專業的인 공장취업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농외취업의사가 높을수록 그리고 농외취

表 12 농외취업유형과 경지소유규모, 연령, 학력, 농외취업의사 및 농외취업가능 정도와의 관계

가 설	x^2	d_f	유의수준(통계적) ¹⁾ 유의성 ²⁾
1(경지소유규모) ³⁾	1.21	4	0.88 없음
2(년 령) ²⁾	4.75	4	0.32 없음
3(학 력) ³⁾	5.10	4	0.27 없음
4(농외취업의사) ⁴⁾	4.51	2	0.10 없음
5(농외취업가능정도)	5.14	4	0.27 없음

1) 5% 유의수준.

2) 연령구분은 39세 이하, 40~49, 50이상으로 구분하였음.

3) <표 3>의 겸종에서와 같은 구분방식을 사용하였음.

4) 적극적(I) 또는 소극적인 취업의사(II)를 가지고 있는 농민만 포함시킨 것임.

업능력 정도가 높을수록 겸업형보다는 탈농형을 선호할 것으로 생각한 것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분석상의 편의를 위하여 농외취업 유형을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본유형, 즉 통근 겸업형(I) 통근 탈농형(II, III)과 이촌 탈농형(IV, V)으로 단순화시켜 농외취업 유형과 경지규모, 학력, 연령 농외취업의사 및 농외취업 가능 정도와의 관계를 겸증한 결과는 <表12>와 같다.

<表12>는 농민들의 농외취업유형과 경지소유규모, 학력, 연령, 농외취업의사 그리고 농외취업가능정도 관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表10>과 <表1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농외취업의사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의 절대다수(65.9%)가 통근겸업형을 희망하고 있으며, 농업을 포기하고 轉業을 하더라도 농촌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통근취업을 하기를 희망하는 통근탈농형의 농민(17.8%)까지 포함하면 83.7%의 농민들이 통근형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절대다수의 농민들이 통근겸업형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농외소득과 농촌공업개발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농촌공업개발이,

바꾸어 말하면 농촌지역으로의 새로운 공장의 입주가 농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출퇴근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농촌지역내의 道路條件과 交通條件에 따라서 농민들의 출퇴근 범위는 확대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마을단위에서 1時間圈의 범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둘째로 농민들의 겸업형 선호는 장기적으로 兼業農家の 農業生產性 問題를 제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바꾸어 말하면 겸업농가의 경우 농외소득증대를 통하여 農業機械 購入資金의 조달 등이 가능하게 되어 농업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¹¹⁾, 영세한 소규모 토지 소유를 전제로 할 때 농가소득에 의존하게 되는 영세소농의 경우 土地利用은 식량조달을 위한 보조적 수단에 그치게 되어 토지이용율의 감소와 함께 농업생산의 副業化現象을 초래하여 영세소농 생산구조를 그대로 존속시킬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¹²⁾

따라서 대다수 농민들과 통근 겸업형에 대한 선호와 관련하여 정책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出退勤이 가능한 범위내에 공장이 입주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농민들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농촌도로 및 교통 수단의 개선, 그리고 겸업형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기타 농업생산자원의 합리적 이용 방안에 관한 문제가 검토되지 않으면 안된다.

IV. 零細小農과 農外就業政策

Ⅱ장과 Ⅲ장의 분석결과는 현재 정책적 차원에서 영세소농의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농외취업

및 취업전환의 촉진과 농촌공업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영세소농 가운데 78.8%의 농민들이 적극적(35.8%) 또는 소극적(43.0%)인 농외취업 의사자를 가지고 있다.

둘째, 그러나 영세소농 가운데 농외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농민들은 15.9%에 불과하며, 중간정도(29.1%)의 능력을 가진 농민을 합하면 45.0%이다.

세째, 농외취업 의사와 취업능력을 감안한 농외취업 가능성도에 따라서 보면 적극적인 의미에서 농외취업(A)이 가능한 영세소농민은 불과 6.0%이며, 소극적인 의미에서 농외취업(B)이 가능한 영세소농민(32.5%)까지 합하더라도 전체 영세농민의 38.5%에 불과하다.

네째, 농외취업 의사자를 가지고 있는 영세소농민들이 희망하는 취업유형으로는 통근 겸업형이 67.0%이며, 통근 탈농형 16.5%, 이촌 탈농형 16.5%로 탈농을 희망하는 영세농민이 전체의 33.3%이다. 그 가운데서 농지를 처분하고 탈농을 희망하는 영세농민수도 13.2%나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은 영세농층이라고 해서 하나의 同質의 集團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농외소득 정책이나 농촌공업개발정책이 구체적으로 영세농민들 가운데서도 어떠한 성격을 가진 영세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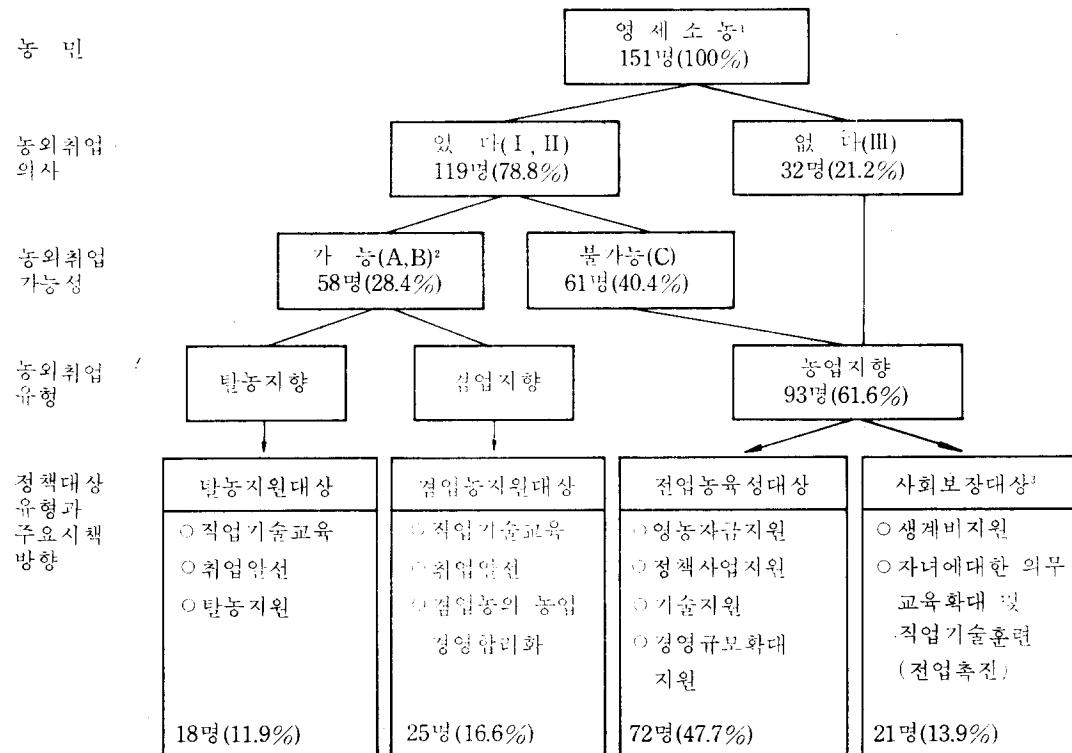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본 논문은 Ⅱ장과 Ⅲ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세소농의 성격에 따라서 소집단으로 세분화하고, 이 세분화된 同質集團들을 대상으로 한 별개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았다.

〈圖 3〉은 영세소농이라는 하나의 집단을 그들의 농외취업 의사와 농외취업 가능성도 그리고 희망하는 농외취업 유형에 따라서 탈농지향, 겸업지향, 그리고 농업지향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다음, 정책적 차원에서 다시 탈농지원대상, 겸업농 지원대상, 專業農 育成對象 그리고 社會保障側面에서의 支援對象 農民의 4개 政策對象集團으로 구분한 것이다.

첫번째의 탈농지원 대상에 속하는 영세소농층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轉業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예를 들면 직업기술교육, 취업알선, 또는 탈농지원(예를 들면 농지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농지판매가 적정수준에서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등) 시책 등을 추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겸업농 지원대상 농민들에 대해서는 직업기술교육과 취업알선과 동시에 그들의 농업생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지원하는 시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겸업농을 중심으로 한 협동영농방식의 모색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세번째의 專業農 育成對象에 속하는 영세농민들에게는 적극적으로 營農資金과 정책사업의 집중적인 지원 그리고 새로운 기술지원과 經營規模擴大支援 등을 통하여 농업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증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施策의 推進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영세농 가운데 농외취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농업을 통한 소득증대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농민들은 장기적으로는 탈농을 촉진시키되,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適正水準의 生計費를 지원하며 동시에 그들 자녀들에 대한 의무교육의 확대실시와 직업기술교육 훈련을 통하여 탈농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

〈圖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된 총 151명의 '영세소농 가운데

圖_3 영세소농에 대한 장기정책 방향에 따른 유형 구분



1) 중, 대농의 경우라도 농외취업을 회피하는 농민들을 포함시킬 수 있음.

2) 농외취업 가능성이 높은 영세농민중에서 농외취업 유형의 구분이 불가능한 농민 15명(9.9%)이 제외되었음.

3) 농업지향형에 속하는 영세소농 가운데서 경지소유면적이 1,500평 미만이면서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를 사회보장 대상농가로 구분시켰음.

서 농외취업 유형 구분이 불가능한 15명(9.9%)을 제외하면 11.9%는 탈농지원 대상, 16.6%가 겸업농 육성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업농 육성 대상 영세농은 전체의 47.7%가 되며, 사회보장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영세농 민도 13.9%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외소득과 농촌공업개발정책의 대상으로서 농외취업이 촉진되어야 할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영세농은 전체분석대상 영세소농의 28.5%가 된다고 말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한다면 하나의 정책대상 집단으로서 영세소농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정책방향도 다양성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하며, 이들의 농외취업을 촉진시키는 정책에 못지않게, 전업농으로 육성시키는 정책과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보호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된다.

V. 結論

농외소득과 농촌공업개발에 관한 최근의 논의들은 영세소농의 소득은 농외소득을 통해서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영세소농의 농외취업과 전업을 통한 탈농의 정책적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특히 영세농민)이 농외취업 의사, 취업 능

력 및 취업 가능성 정도, 그리고 그들이 희망하는 농외취업 유형에 관한 본 연구 결과들은 지금까지 일반적인 견해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 결과 가운데서 정책적 차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농외소득과 농촌공업 개발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세소농층은 전체 연구대상 영세소농층의 약 3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약 48% 수준의 영세 소농의 소득문제는 농외소득 보다는 농업소득증대 쪽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나머지 14% 정도의 영세소농들은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할 농민층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영세소농이 異質性을 띠고 있는 사회집단이며, 이들의 구체적인 사회적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는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농외소득과 농촌공업 개발정책은 영세 소농의 농외취업과 탈농을 통한 농외소득증대의 기회를 넓혀 줄 수 있는 정책수단의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모든 영세소농의 소득문제가 이 정책의 추진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뿐 아니라 농업구조개선 문제를 위해서도 영세소농들의 轉業을 통한 탈농이 촉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도, 대다수의 영세소농민들이 현실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유형이 경업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농촌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社會科學者나 政策擔當者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농민들의 의사에 따라 政策目標와 手段을 선택 개발해야 하느냐, 아니면 연구자

나 정책담당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농민들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목표와 수단을 선택 개발해야 하는 문제이다. 농민들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생각과 정책담당자나 연구자들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생각 사이에 현실적인 차이가 있다면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농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정책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과 현실적인 괴리를 보일 때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적어도 개별 농민들에게 현재의 상태에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정책자는 개별 농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筆者들의 입장이다. 농외취업이나 취업전환과 같이 개별 농민들의 職業選擇에 관한 意思決定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단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결국 개별 농민들 스스로이기 때문에 정책의 입장에서는 개별 농민들의 장래의 취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절대다수의 농민들이(특히 영세소농민들이) 탈농형 보다는 경업형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분석이 앞으로의 중요한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농민들의 경업형에 대한 선호가 농민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회 경제적 여건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라고 한다면, 농외소득정책이나 농촌공업 개발정책 또는 농업구조개선정책도 농민들에게 탈농형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겸업형을 전제로 한 새로운 정책 방향의 모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 註1. 金聖昊, 「農外所得決定要因의 巨視的 分析」, 農業經濟研究報告 44, 農水產部 農業經營研究所, 1972, pp. 1~4.
- , 「亞細亞 畜作社會에 있어서 小農問題의 再認識」, 農業經濟研究報告 14, 1972. 12, pp. 39~48.
- 金英植, 「農家所得成長과 農業構造改善」, 「農村經濟」, 第2卷 3號, 1979. 9, pp. 27~28.
- 崔洋夫, 「農家所得成長의 問題와 政策課題」, 「轉換期의 韓國農業」,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79, pp. 317~321.
- , 「農家所得增大方案에 관한 理論的 檢討」, 「農村經濟」, 第1卷 2號, 1978. 12, pp. 116~120.
2. 崔洋夫 外, 「農外所得增大方案에 관한 研究」, 第1次年報告書,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78, pp. 137~174.
3. 黃弘道·李正漢, 「工業化에 대한 農村의 貢獻」, 「農村經濟」, 第2卷 3號, 1979. 9, p. 93.
4. 農촌공장 취업시 불리한 조건으로는 (1) 연령제한, (2) 의무적으로 취업기술교육 받음, (3) 농지판매, (4) 자녀교육 지장, (5) 농사보다 수입이 낮음, (6) 취업불안정, (7) 전가족이사, (8) 공장직공, (9) 농사보다 많이 힘든 직업의 9개 항목이었으며, 유리한 취업조건으로는 (1) 연령제한 없음, (2) 기술교육을 통한 숙련공취업, (3) 겸업형취업보장, (4) 자녀들의 중학과정까지 의무교육, (5) 농사보다 수입이 높음.

- 음, (6) 취업안정, (7) 완전영농기계화, (8) 농사보다 덜 힘든 직업의 8개 항목이었음
5. 농업에 대한 만족정도 측정에 사용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만일 당신이 계속 농사를 짓는다면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생활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6. 돈에 대한 태도측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 1) 지금보다 더 힘들게 일을 해야 한다면, 2) 식구들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면, 3) 젊은 사람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면, 4) 일하는데 위험이 따른다면, 5) 자주 이사를 해야 한다면, 6) 지저분한 일을 해야 한다면, 7)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8) 자녀교육에 지장이 있다며,
7. 1979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의 지상에 보도된 기업들의 직원(기능적)의 모집광고(총 44건) 내용에서 가장 많은 기업들이 바라고 있는 연령과 학력수준임.
8. 韓國經營者協會, 「企業停年制現況」, 1979. 2, p. 27.
9. 이 경우 거주지인 마을을 떠나 大都市로 離村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농촌소도읍 또는 지방도시에 머무르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
10. 崔洋夫, 「農家所得增大方向에 관한 理論的 檢討」, 上揭書, pp. 119~120.
11. 金聖昊, 「亞細亞 畜作社會에 있어서 小農問題의 再認識」, pp. 45~48.
12. 吳浩成, 「經濟發展과 農地制度」, 研究中間報告 7,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79, pp. 51~55.
- 崔洋夫, 「農家所得增大方案에 관한 理論的 檢討」, p. 119.